

〈별지 제3호 서식〉	
시민의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 (제14조 제2항 관련)	
1. 감사청구사항 가. 청구인 : 대표자 : 나. 청구일자 : 다. 청구요지 : 2. 감사개요 가. 감사기간 : 나. 감사대상기관 : 다. 감사반 편성 : 라. 감사방법 : 3. 감사결과 가. 중점 감사사항(청구인의 주장사항 등) 나.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다. 건의·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라.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종합의견 마. 기타 특기사항	
<p>.....</p> <p>서울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중 “부시장”을 “행정(1)부시장”으로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예산실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위원은 시장이 회의개최시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로 동조동항제1호의 “시의 경제관련 실·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5조중 “상공과장”을 “산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
<p>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>.....</p> <p>의안 번호 564 2000. 5. 기획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        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         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         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4월 24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         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임재오)          가. 제안이유          지역별로 신용보증 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</p>	

<p>금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('99.9.7)되어 시행(2000.3.1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·재단법인의 명칭 및 그 설립근거를 변경함(안 제명 및 제1조)</li> <li>○ 조례명 변경 :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→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</li> <li>○ 명칭변경 :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 → 서울신용보증재단</li> <li>○ 설립근거변경 : 민법 제32조 → 지역신용보증재단법·제9조</li> <li>□ 재단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3조)</li> <li>□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정함(안 제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금융기관·기업·기타기관 등의 출연금 및 정부보조금</li> </ul> </li> <li>□ 기금의 용도를 정함(안 제6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기업 등 신용보증에 대한 금전채무 변제비용 및 재단관리·운영비용</li> </ul> </li> <li>□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</li> <li>□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1조 및 제12조)</li> <li>□ 재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단의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보증</li> <li>-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</li> <li>- 경영지도 및 구상권의 행사</li> <li>-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□ 재단의 해산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파견의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3조 및 제16조)</li> </ul>	<p>□ 재단이 조합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세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.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)</p> <p>다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관련법령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·령, 별첨</li> <li>□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</li> <li>□ 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입법예고결과(2000.2.17~2000.3.11), 별첨</li> <li>(2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중요 규제사무 없음.</li> </ul> </li> <li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동수)</li> <li>□ 개정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'99.3.20 제정, 운영되어 왔으나, '99.9.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, 시행(2000.3.1)됨에 따라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으로 설립근거 및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 이며</li> <li>○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융자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/li> <li>□ 조문별 주요제정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 제명 및 제1조 「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와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으로의 조례명 및 명칭변경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변경에 따른 것이며</li> <li>○ 안 제3조 지점설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(본점 및 지점 등) 제2항의 근거로 재단의 업무가 확대될 경우 안 제6조 재단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구역안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</li> <li>○ 안 제9조 및 제10조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제1항, 제2항을 근거로 마련한 것이며</li> <li>○ 안 제8조(업무) 제2항 재단의 업무를 규</li> </ul> </li> </ul>
---	---

<p>정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(업무)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</p> <p><b>□ 종합 의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'99년 7월 15일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개시할 때의 목적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, 영상·패션·소프트웨어 관련기업,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인 서울형산업 등에게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력 측정자료가 미흡하여 현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상 지원을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채무를 보증·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여 왔으며</li> <li>○ 금번 조례개정으로 서울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다만, '99년 말 현재 신용보증계획은 1000억 원(1,700건수)으로 계획대비 보증실적비율은 약 32%인 337억 5,600만 원(405건수), 2000년 신용보증계획은 1,300억 원(1,500건수)으로 2000년 4월 11일 현재 계획대비 보증실적비율은 약 17%인 235억 8,500만 원(355건수)으로 저조한 신용보증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, 아울러 대출 기준과 지원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보다 많은 업체들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.</li> </ul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 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0명, 출석 위원 6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>의안 번호 565</p> <p>2000. 5. 기획경제위원회</p>	<p>1. 심사 결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4월 24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임재오)</p> <p>가.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용도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을 추가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□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범위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추가함.(안 제4조)</p> <p>* 중소기업지원시설 : 중소기업의 창업보육, 시제품·기술·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·운영하는 서울창업보육센터, 서울애니메이션센터, 서울벤처타운 등의 시설</p> <p>□ 운전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를 추가함.(안 제8조)</p> <p>□ 시설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, 유통업·건설업·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추가함.(안 제12조)</p> <p>다. 참고사항</p> <p>□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③ (생 략)</p>
---	---